

약관 및 설명서 변경 공시

1. 투자신탁의 명칭

신한 미래설계 적립식 주식투자신탁 제 1 호

2. 약관 및 설명서 변경 시행일 : 2007.1.8

3. 약관 및 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- 변경 사유: 이 투자신탁을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하기 위함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제1조 (목적등)	①~② <생략> <신설>	①~② <생략>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<u>종류형 투자신탁</u> 으로서 <u>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다양한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</u>
제8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)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1,000)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<u>수익증권</u> 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()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<u>수종</u> 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.
제9조(추가신탁)	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<u>수익증권</u> 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.	자산운용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<u>수종</u> 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,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.
제10조(신탁금의 납입)	①<생략>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으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<u>기준가격</u> 에 추가로 설정하는 <u>수익권좌수</u>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<u>수익권좌수</u> 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,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.	①<생략> ②자산운용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기준가격</u> 에 추가로 설정하는 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,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.
제13조(수익권의 분할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<u>수익증권</u> 으로 표시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<u>수익증권의 종류별로 1 좌</u> 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

	<p>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<u>수익증권의</u>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.</p> <p>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.</p>	<p>며, <u>수종의</u>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<u>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종류별로</u>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.</p> <p>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<u>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</u>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.</p>
<p>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	<p>①자산운용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④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자산운용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</u>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클래스 C 수익증권</u></p> <p>2. <u>클래스 A-V 수익증권</u></p> <p>②~④ <생략></p> <p>⑤<u>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u></p>
<p>제18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</p>	<p>①~⑤ <생략></p> <p>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(“실질수익자명부”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<u>수익권의 좌수</u>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~⑧ <생략></p>	<p>①~⑤ <생략>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(“실질수익자명부”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<u>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</u>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~⑧ <생략></p>
<p>제19조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)</p>	<p>①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“순자산총액”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	<p>①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]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</u>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“순자산총액 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</u>]”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[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]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(<u>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</u></p>

	<p>② <생략></p> <p>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,000 원으로 하고 이 경우 1 좌는 1 원으로 한다.</p> <p>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.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<u>다시 발행하는 날</u>의 기준가격은 1,000 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.</p> <p>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이 투자신탁의 전체에 대한 기준 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</u>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(<u>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</u>)을 자산운용회사.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, 공지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약관변경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<u>종류 수익증권 중 제20조의 클래스 C 수익증권은 약관변경 이전에 기 발행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승계하여 적용한다.</u></p>
제20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)	<신설>	<p>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클래스 C 수익증권: 제한 없음</u> 2. <u>클래스 A-V 수익증권: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</u> <p>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이 조의 변경일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은 <u>클래스 C 수익증권으로 본다.</u></p>
제20-2조(수익증권의 판매가격)	<p>제 20 조(수익증권의 판매가격)</p> <p>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3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[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]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 20-2 조(수익증권의 판매가격)</p> <p>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</u>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[단, 토요일은 제외한다]로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제20-3조(판매수수료)	<신설>	<p>제 20-3 조(판매수수료)</p> <p>①수익자가 <u>클래스 A-V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</u>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</p>

		<p>료를 취득한다.</p> <p>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)의 100분의 1 범위이내에서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③클래스 A-V 수익증권 외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
제23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
제24조(수익증권의 일부 환매)	<p>① <생략></p> <p>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제21조 내지 제23조,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<u>수익증권</u>을 교부한다.</p>	<p>① <생략></p> <p>②제 1 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제 21 조 내지 제 23 조, 제 25 조 내지 제 27 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을 교부한다.</p>
제25조(수익증권의 환매 제한)	<p><생략>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</p> <p>2. <생략></p>	<p><생략></p> <p>1.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전전영업일(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)</u>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 <u>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류 수익자총회인 경우 이 조항은 당해 종류</u></p>

		<p><u>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에만 적용된다.</u></p> <p>2. <생략></p>
제27조(수익증권의 부분환매)	<p>①~③ <생략></p> <p>④자산운용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<u>기준가격</u>을 산정하여 <u>수익증권</u>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.</p> <p>⑤ <생략></p>	<p>①~③ <생략></p> <p>④자산운용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<u>당해 종류 기준가격</u>을 산정하여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.</p> <p>⑤ <생략></p>
제28조(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)	<p>①~②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 <u>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
제29조(수익자총회의 소집)	<p>① <생략></p> <p>②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④~⑥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 <생략></p> <p>②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(<u>특정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</u>)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(<u>특정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수</u>)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④~⑥ <생략></p> <p><u>⑦제 28 조 제 3 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2 항, 제 3 항 및 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발행된 수익증권총수”는 발</u></p>

<p>제30조(수익자총회의 운영)</p>	<p>①~② <생략> <신설></p>	<p><u>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수</u>”로 본다.</p> <p>①~② <생략> ③ <u>제 28 조 제 3 항에 의한 수익자 총회는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수”는 “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수”로 본다.</u></p>
<p>제33조(수익자총회의 연기)</p>	<p>①~③ <생략> <신설></p>	<p>①~③ <생략> ④ <u>제 28 조 제 3 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”는 “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”로 본다.</u></p>
<p>제40조(투자신탁보수)</p>	<p>①~② <생략>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약관변경 2005.04.25)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5.9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18.0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45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</p> <p><신설></p>	<p>①~② <생략>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보수율에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 하는</u>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<u>A. 클래스 C 수익증권</u>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95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8.0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5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</p> <p><u>B. 클래스 A-V 수익증권</u></p> <p>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95 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0</u>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5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</p>
<p>제41조(투자신탁재산의</p>	<p>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</p>	<p>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</p>

<p>운용비용등)</p>	<p>용은 <u>수익자</u>의 부담으로 하며, 자산운용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②제 1 항에서 “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 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 <p>1.~4. <생략></p> <p>5. 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p> <p>6.~9.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용은 <u>전체</u>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,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.</p> <p><u>다만,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소지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.</u></p> <p>②제 1 항에서 “<u>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</u>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 <p>1.~4. <생략></p> <p>5. <u>전체</u> 수익자총회 관련비용</p> <p>6.~9. <생략></p> <p><u>③제 1 항의 단서규정에서 “특정 종류의 수익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비용”이라 함은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u></p> <p>1. <u>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 관련 비용</u></p> <p>2. <u>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</u></p>
<p>제43조(이익 분배)</p>	<p>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</u>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	<p>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</u>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
<p>제44조(이익 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)</p>	<p>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</p> <p>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4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.</p>	<p>① <u>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 43 조에 의한</u>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새로운 당해 <u>종류의</u> 수익증권을 매수한다.</p> <p>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<u>종류</u>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4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
<p>부 칙</p>	<p>부 칙 4(변 경)</p>	<p>부 칙 6 (변 경)</p>

	<p>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시[오후 3 시]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 2 조(수익증권 판매가격의 예외) 제 20 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시[오후 3 시]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<u>당해 종류</u>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부 칙	<p>부 칙 4(변경) 제3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①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5 시[오후 3 시]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②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5시 [오후 3시]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</p>	<p>부 칙 6 (변경) 제3조(수익증권 환매가격등의 예외) ①제 22 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5 시[오후 3 시]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</u>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②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15시 [오후 3시]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</u>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</p>